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5-262호

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간 합병 인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.

2015년 10월 19일
금융위원회

- 다 음 -

가. 신청현황

신청자	신청일자	신청취지 및 내용
(주)한국스탠다드 차타드금융지 주 (주)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	2015.10.12.	○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제5조의3에 따른 (주)한국 스탠다드차타드금융지주와 (주)한국스탠다드 차타드은행 간 합병 인가 신청

나. 의견제시방법 및 기간

상기의 신청현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'15.10.30일까지 아래의
연락처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담당자 :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금융위원회
은행과 김윤희 사무관(☎2156-9812, fscbank@korea.kr)